

第57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本會議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2月 28日(水) 11時 01分

議事日程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附議된 案件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丁昌熙議員 外 4人發議) 1 面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4 面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4 面
4. 서울특별시 종로구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청장 제출) 4 面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폐기물 조례중 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4 面

(11時 01分 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21명 중 출석위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丁昌熙議員 外 4人發議)

(11時 03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委員長!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羅在岩 運營委員會 委員長 羅在岩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 洪承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병자년 새해를 맞아 의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 처리한 안건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발의해주신 정창희 의원 외 4인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우리의원들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안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장과 의원의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가 차등이 많으며, 금액의 현실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그리고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은 그 성격상 조례개정 이후의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 건과 부칙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안)중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23
----------	-----

제안년월일 : 1996. 2.

제안자 : 정창희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14877호(1995. 12. 30)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며
- 대통령령 제14857호(1995. 12. 29)가 개정

-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3조제2항에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신설
- 제5조제2항의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 (별표 1)

3.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8,000	18,000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 3 조(회의수당) ① 생략 ②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3 조(회의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개정(안)】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8,000	18,000

○議長 金憲中 羅在岩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鍾路區廳長 提出)
3.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鍾路區廳長 提出)
4. 서울특별시종로구'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鍾路區廳長 提出)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鍾路區廳長 提出)

(11時 08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市民行政委員會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市民行政委員會 玄壽漢 委員長!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玄壽漢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본 부과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구 조례상 기존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이는 법 체계상 타당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에 유해한 광고의 이전 및 법률에 의한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

분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및 어린이집, 노인정 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사업임 등을 고려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유재산 관리에 의결권의 축소가 초래될 소지가 있어 이의 보완책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재 조정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리수거시 “페스티로폼”을 그동안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 처리하는 것이 쓰레기 처리비용 및 환경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419	제출년월일 : 1996. 2. 제 출 자 : 종 로 구 청 장
------------	-----	---------------------------------------

1. 개정이유

호적과태료부과시 호적법시행규칙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바 동일한 내용의 구조례 해당조항을 삭제코자 함.

2. 주요골자

호적과태료부과기준 관련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 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부과기준 및 면제)를 (부과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1
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 4 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구청장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부과면제) ①삭제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해 태 기 간	과 태 료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1월 미만	10,000원	20,000원
1월 이상 3월미만	20,000원	40,000원
3월 이상 6월미만	30,000원	6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안 번호	420
----------	-----

제출 년월일 : '96. 2.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시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함(안 제2조).

나.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 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안 제3조).

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라.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96년 기정 예산에서 조치후
부족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시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4.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구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원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지도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21
----------	-----

제출 년월일 : '96. 2.

제출 자 : 종로구청장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한다.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회계별로 수립하는 '9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작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
- 부암동 어린이집 외 2개소 및 교남동 노인정 외 2개소의 신축부지 매입
- 삼청동 88-32 소재 2층 건물(구 삼청동청사)을 종로경찰서에서 청와대 및 인왕산 개방에 따라 급증하는 경비 및 공공 질서 유지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계속 무상대부

3. 관리계획(안) : 별 첨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무상대부)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96 편성예산)

종로구청장이 1996. 2 . 승인 요청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9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계 산 표 시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면적(m ²)				
계	29건		2,942.7				
1	대	창신동 197-49	123.3	'96 하반기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부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59-19 박종찬	창신동
	대	창신동 220	175.2	"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20 김형철외 3인	222-1
	대	창신동 221	122.3	"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02-1 김준석	285
	도로	창신동 222-1(일부)	28.8	"	"	국(국가소유)	287
	대	창신동 222-3	8.6	"	"	재 무 부	292
	대	창신동 222-9	97	"	"	서울시 영동포구 여의도동 27-2	236-2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240
	대	창신동 281-1	92.6	"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82-1 최 시	241일부
	대	창신동 281-3	115.7	"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4-1	수용대상 은
					신답극동(아) 2동 1102호 최득의		도시계획
	대	창신동 282-1	152	"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82-1 김남숙	결정
	대	창신동 284-2	62.5	"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84-2 신상일	지적측량 에 따라
	대	창신동 284-3	82.0	"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82-1 최 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대	창신동 284-4	46.3	"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86	이성은
	대	창신동 285(일부)	8.2	"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86	이성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면적(m ²)				
	대	창신동 287	42.2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부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86 이성은	
	대	창신동 292(일부)	231.3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9-245 유순해	
	대	창신동 297	106.5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03 손정자	
	대	창신동 298	124.7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98 신정숙	
	대	창신동 299	112.4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99 권미경	
	대	창신동 300	36.4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36-11 최홍성	
	대	창신동 236-2(일부)	0.3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6-2 이은용	
	대	창신동 240(일부)	30.3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40 손중식	
	대	창신동 241(일부)	47.9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740 신정에	
	대	창신동 247	82.6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47 김상희	
2	대	부암동 관내	165 내외	부암동어린이집 신축부지	부암동 관내 (미정)	
3	대	종로3·4가동 관내	165 내외	종로3·4가동어린이 신축부지	종로3·4가동 관내 (미정)	
4	대	삼청동 관내	165 내외	삼청동어린이집 신축부지	삼청동 관내 (미정)	
5	대	교남동 관내	188.6	교남노인정신축부지	교남동 관내 (미정)	
6	대	가회동 관내	165 내외	가회동노인정 신축부지	가회동 관내 (미정)	
7	대	청운동 관내	165 내외	청운동노인정 신축부지	청운동 관내 (미정)	

(무상) 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재 산 가 액	허 가 기 간	무 상 대 부(사용허가) 근 거	비 고
	종 별	소 재 지	지 목 · 구조	수 량			
1	무상대부	삼정동 88-22 "	대 건물(2층)	106.5 76	96. 1. 1 ~ 12. 3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 제1호	종로경찰서 (삼정동공관 초소)
계			대 1 건물 1	106.5 76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8
----------	-----

제출년월일 : '96. 2.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생활수준향상과 제품의 사용편리성 등으로 페스티로폼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동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일일이 파쇄,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95. 10. 20 제88차행정쇄신위원회에서 동 폐기물을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 분리·수거토록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페스티로폼을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개정(안 제2조 제7호)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페스티로폼” 추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제7호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별표 1】중 종류 제5호의 “품목”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별표 1】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플라 스틱 류	- 페스 티로 폼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속에 넣어서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컵라면용기, 1회용용기, 페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6.(생략) 7. 재활용 가능품 :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1 ~ 6.(생략) 7. 재활용 가능품 :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1 ~ 4. (생략) 5. 플라스틱류	품 목 (생략) - PET병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생활용 품류 * 플라스틱제질 식 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배 출 요 령 (생략)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 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 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종 류 1 ~ 4. (생략) 5. 플라스틱류 	

○議長 金憲中 玄壽漢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역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市民行政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市民行政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市民行政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市民建設委員會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時 16分 閉會)

○出席 議員 20人

金憲中	安哲柱	李炳文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玄孝善	沈載得	鄭泰淳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洪起瑞	康來奎	金以煥	金正大	宣相善

○出席 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權	哲
財 務 局 長	金 誠	泰
市 民 局 長	金 賢	植
都 市 整 備 局 長	趙 學	來
建 設 局 長	吳 鍾	錫
保 健 所 長	李 星	世

